

[엠바고: 2014. 7. 14.(월), 브리핑(14:00)시부터 보도가능]

---

# **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**

---

2014. 7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감 독 원

## [ 목 차 ]

I .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현황 .....	1
II . 평 가 .....	2
III . 개선 방안 .....	3
1. 인가제도 개선 .....	3
가. 인가·등록 업무단위 개편 .....	3
나.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 .....	7
다. 기타 규제 정비 .....	8
2. 인가절차 정비 .....	9
3. 인가정책 보완 .....	10
IV . 향후 추진계획 .....	13
【참고1】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업무단위 .....	14
【참고2】 업무단위 조합 '일괄 인가제' 개요 .....	15
【참고3】 자산운용사 성장경로(안) .....	16

## I.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현황

-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으로 분류
  - 투자매매·증개·집합투자·신탁업은 42종의 인가단위 운영
  - 투자자문·일임업의 경우 6종의 등록단위 운영
- 현행 인가·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진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
  - 증권사 등 전업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·특화하거나, 업무단위 추가(add-on)를 통해 영업 영역 확장 가능
  - 은행 등 겸업 금융투자업자는 필요한 겸영·부수 업무에 한해 금융투자업 영위

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업무단위 개황 ([→참고1](#))

업종	금융투자상품	단위	유형
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	▶ 증권 / 채무증권, 지분증권, 집합투자증권 등 ▶ 장내파생 / 주권기초 ▶ 장외파생 / 주권기초, 주권외기초 등	33종	인가 (42종)
집합투자업	▶ 모든 펀드 / 증권, 부동산, 특별자산, 혼합자산	5종	
신탁업	▶ 모든 신탁재산 / 금전만신탁, 금전제외신탁 등	4종	
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	▶ 증권·파생·부동산·예치금 / 증권·파생·예치금, 부동산·예치금	6종	등록 (6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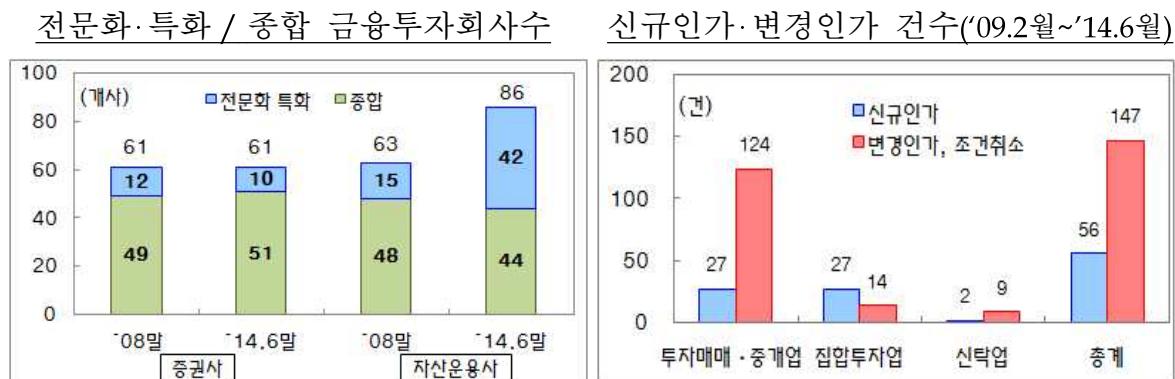
- 한편, 금융위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'금융투자업 인가정책'을 수립·운용

### 【참고】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

- ▶ 금융투자회사 신설, 업무단위 추가로 인해 시장리스크 증가와 감독상 우려가 크지 않을 것
- ▶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할 것
- ▶ 기존 회사의 수익 다변화와 시장내 공정경쟁을 촉진할 것

## II. 평가

- '기능별 규율' 원칙에 따른 현행 인가제도는 규제차익을 최소화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
- 다만, 전문화·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
  - 자산운용사의 경우 전문화·특화사의 비중이 높아졌으나,
  -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영업모델로 경쟁하는 시장구조 하에서 전문화·특화가 상대적으로 미흡
    - \* 전체 자산운용사중 전문화·특화사 비중(%) : ('08말)23.8 → ('14.6말)48.8
    - \* 전체 증권사중 전문화·특화사 비중(%) : ('08말)19.7 → ('14.6말)16.4
- 오히려,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, 인가 소요기간(통상 7~8개월), 인가 반납시 재취득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
  - \* '09.2월~'14.6월간 금융투자업 인가중 신규인가가 아닌 취급상품 범위 변경 인가 등(변경인가·조건취소)이 전체 인가건수(203건)의 72%(147건)에 이른



\* 신규인가 : 금융투자업 진입시 최초 인가

\* 변경인가·조건취소 : 인가단위 추가 등

-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,
-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·특화 및 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

### III. 개선 방안

1

#### 인가제도 개선

- ◇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체계를 개편하여 일정 업종 내에서의 취급상품 범위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
- ◇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관련 요건을 합리화하고, 기타 인가 유지 및 폐지 등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
- ⇒ 시장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·특화 및 사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#### 가. 인가·등록 업무단위 개편

##### (1) 기본 방향

-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 적용
  -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(add-on)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
※ 단, 은행 등 경영금융투자업자\*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 유지

\* 경영금융투자업자 : 은행, 보험, 외국환중개회사 등

-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, 통합 가능한 인가 업무단위를 통폐합
  - \* (투자매매업) 사채인수 업무단위 폐지 → 단위수 △1
  - (집합투자업) 부동산펀드·특별자산펀드 업무단위 통합 → 단위수 △1
-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업무단위별 인가·등록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 규모를 축소(집합투자업, 투자일임업)

## (2) 업종별 개선 방안

### 투자매매업 · 투자증개업

- (투자증개업) 신규 진입시 현재와 같이 인가 → 진입 이후, 투자증개업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
- (투자매매업) 상품군(증권, 증권(인수제외), 장내파생, 장외파생)별로 신규 진입시 현재와 같이 인가 → 진입 이후, 상품군내 업무 단위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
  - \*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업자의 자기계산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만큼,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별로 인가 필요

### 【예시】 제도개선 효과

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			
업종	상품군	금융투자상품 개별 상품	자기자본 (일반투자자 기준)
투자매매업		...	...
투자증개업	증권	채무증권	30억 원
		지분증권(집합제외)	10억 원
		집합투자증권	10억 원
	장내파생	...	...
	장외파생	...	...
집합투자업		...	...

- ◇ i) 최초 채권 투자증개업만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ii) 이후 지분·집합투자증권 등 여타 증권 투자증개업으로 업무 확대시,
- (현행) 업무 단위별 추가 인가 필요 → (개선) 등록만으로 가능

현 행	개 선
i ) 채무증권 증개업 인가(①)  ii ) 업무단위(지분증권, 집합투자증권, 파생 증개업) 확대시 <u>추가인가</u> <sup>*</sup> (②~⑤)  * 소요기간 : 최장 2~3년	i ) 채무증권 증개업 인가(①)  ii ) 업무단위(지분증권, 집합투자증권, 파생 증개업) 확대시 <u>등록</u> <sup>*</sup> (②~⑤)  * 소요기간 : 1년 이내

## 집합투자업

- 자산운용업 성장 프로세스와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인가·등록 체계를 재설계
- 투자자문·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\*,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
  - \*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 → 등록은 제도 개선 추진 중('14.4월 입법예고)
-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 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(add-on)할 수 있도록 허용
  - ☞ [등록] 자문·일임업 또는 사모펀드 운용업(종합) → [인가] 공모펀드(단종 : 증권/실물\*) → [등록] 공모펀드(종합)

\*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인가 단위를 통합하여 현행 4단위(증권, 해지, 부동산, 특자)인 인가 단위를 2단위(증권, 실물)로 대폭 축소

### < 현행 >

기준	인가·등록단위	진입규제 (자기자본)
	투자자문 투자일임	등록 (1.5~27억원)
	집합투자업	인가
	단종 (증권, 부동산, 특별자산)	- 증권: 40억원 - 부동산: 20억원 - 특자: 20억원
	집합투자업	인가
	혼합 (해지펀드)	- 혼합: 60억원 - 종합: 80억원
	종합	

### < 개선 >

기준	인가·등록단위	진입규제
i )	투자자문 투자일임	등록 (15~20억원이하)
	사모 집합투자업 (해지 펀드)	등록 (20억 원)
ii)	공모 집합투자업 단종 (증권, 실물)	인가 (40억 원)
iii)	공모 집합투자업 종합	등록 (80억 원)

\* 사모펀드운용업의 최저자기자본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최저자기자본 규모도 완화 예정

-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
  - (현행) 증권단종(40억원) → 해지 add-on(+60억원) → 부동산&특자 add-on(+40억원)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업 영위 : 총 140억원
  - (개선) 사모(20억원) → 증권단종 add-on(+20억원) → 부동산&특자 add-on(+40억원)을 통해 종합자산업 영위 : 총 80억원( $\Delta$ 60억원)

### 신탁업

- 재산관리 및 보관의 특성, 취급상품의 차별성\* 등을 감안할 때 상품간 상호 겸영이 부적절한 만큼 **현행 상품단위별 인가를 유지**
- \* 예시 :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 신탁업과 1:1 맞춤형 자산관리 목적 금전신탁업의 경우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려움

### 투자자문업 · 투자일임업

-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**등록제**로 운영 중 → **현행 유지**
  - \* 투자자문업·일임업은 '14.5월 현재 총 156개사가 등록중이며 진입·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('13년중 17개사 신규인가, 17개사 자진퇴출)
- 사모펀드운용업의 최저자기자본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**투자 일임업자의 최저자기자본 규모도 완화**

#### < 기대 효과 >

##### ◇ 금융투자업 영위시 인가가 필요한 업무단위가 **대폭 축소**

\* ATS투자매매업·증개업 및 장외채권증개 등 독립적 인가단위 제외시, 현행 39개 인가단위가 10개 인가 및 27개 하위 등록단위(2개 폐지)로 변경

##### ◇ 업무단위 추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(현재 7~8개월→2~3개월)

업종	금융투자상품	인가필요 단위
투자매매업	증권	①
	증권(인수제외)	②
	장내파생상품	③
	장외파생상품	④
투자증개업	증권	⑤
	장내파생상품	
	장외파생상품	
집합투자업	-	⑥
신탁업	-	⑦~⑩
ATS투자매매업, ATS투자증개업, 장외채권증개		독립 단위

## 나.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

### ①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(시행령 개정)

- (현행)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 →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

\* 예시 : 친인척과 계열분리로 인해 상호간 독립경영을 하였으나, 친인척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진출 불가

- (개선)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 공정위에서 확인되는 경우,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

\* 은행법 시행령은 계열분리로 인한 특수관계인 배제 조항을 기 반영

### ②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(감독규정 개정)

- (현행)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'최근 3년간'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→ 금융투자회사 신설, 인수 등의 인가가 제한

- (개선) 기관경고에 한해 동 제한기간을 '최근 1년간'으로 단축

\* 금융투자업은 타 금융업과 달리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, 현재의 과다한 경쟁 구조도 해소해 나갈 필요 → 제한기간 단축은 전반적인 인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

- 시정명령,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 등 상위단계 중재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'최근 3년간' 조건을 유지

## 다. 기타 규제 정비

### ① 인가 행정관행으로 운영중인 숙여기간 폐지(숨은규제 개선)

- (현행) 인가절차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인가 신청을 제한하는 숙여기간을 운영
- (개선)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숙여기간을 폐지

### ② 인가·등록단위 자진 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(감독규정 개정)

- (현행) 금융투자회사가 인가·등록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, 해당 업무단위에 대해 5년간 재진입을 제한
- (개선) 보유중인 인가·등록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·매각하는 경우에만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고,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후 재신청 허용
  - \* 금융투자회사 매각후 신규진입 신청 등 '인가쇼핑'에 대한 재인가 제한은 유지하되, 금융투자업자의 자발적 사업구조조정 및 전문화·특화 지원

#### 【참고】 인가단위 자진폐지시 5년간 진입금지 제한 관련

- ▶ (규제목적) '인가쇼핑'으로 인한 인가 남발, 무분별한 영업폐지 등 방지
- ▶ (평가) 대주주가 금융투자회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유형의 '인가쇼핑'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반면, 금융투자업자가 미영위 업무 단위도 계속 보유하도록 하여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

### ③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·등록 최저 자기자본 미달시 인가·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단축(시행령 개정)

- \* (현행) 특정 회계연도말 기준 인가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유예 → (개선)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

◇ 인가 소요기간 단축, 세부 가이드라인 공개, 인가서류 간소화 등  
인가절차 정비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경감

① 인가→등록제 전환 예정인 상품 관련 업무단위 추가(add-on)에 대해서는 “Fast-track 인가” 시행

※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(add-on)는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나, 관련 법령 개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⇒ 신속히 인가받을 수 있는 Fast-track 절차를 마련하여 법령 개정전까지 운용

- (현행) 취급 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 추가시에도 금감원 심사 → 증선위 심의 → 금융위 예비·본인가 등 중충적 심사를 거침
- (개선) 취급 상품 추가 등 ‘변경 인가’ 신청시에는 등록제에 준하는 신속한 인가절차 운영
  - \* 예비인가 생략 등을 통해 신청후 인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: (현행) 7~8개월 → (개선) 3~4개월

②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

- (현행)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심사요건별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움
- (개선)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심사 기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공표
  - \* 전문인력 최소기준, 물적설비 점검사항, 사업계획 작성방식 등 포함

③ 인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

- (현행)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다양한 서류(약 20종)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 발생
- (개선) 중복서류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

◇ 現 인가정책 기조를 유지하되, 업종·업권별로 일부 조정·보완

- (투자매매업·증개업)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 단위를 묶어 “일괄 인가제” 시행
- (집합투자업) 자산운용사의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하여 “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” 마련·시행

## [1] 기본 방향

- ① 시장규모에 비하여 금융투자회사 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현행 인가정책 기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,
- 업종별 영업특성과 사업모델 등을 감안하여 인가정책 일부 보완
- ② 인가정책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(예 : 매년 1/4분기중)으로 ‘인가정책 방향’을 공표

### <참고> 現 금융투자업 인가정책 주요 내용

구 분	주요 사항
전업금융투자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문화·특화 금융투자회사 신설 신청을 중심으로 심사</li> <li>· 리스크 증가 소지,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, 투자자 편의 제고 등을 감안하여 심사</li> <li>· 동일그룹내 전문화·특화 복수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</li> </ul>
· 증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투자매매업·투자증개업내 업무 추가 허용</li> <li>· 신탁업 추가 허용</li> </ul>
· 선물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증권 매매업·증개업 추가 허용</li> <li>· 장외파생상품 매매업(제한적 허용)</li> </ul>
· 자산운용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증권펀드 운용사 진입 제한적 허용</li> <li>· 부동산 운용사 진입 제한적 허용</li> </ul>
겸영금융투자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 등 추가 허용</li> </ul>

## (2) 업종·업권별 보완 방안

### 투자매매업 · 투자증개업

-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단위 조합의 '일괄 인가제(모듈형 인가제)' 시행 ([→참고2](#))
  - (현행) 1~2개 업무단위를 인가받아 금융투자업에 진입
    - 그러나, 취급상품이 제한되고 원활한 영업이 곤란하여 추가 인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
  - (개선) 상호연관된 업무단위 조합(모듈) 별로 일괄 인가 실시
    - \* 모듈 : 상호관련성이 높아 함께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가·등록단위 조합
- M&A 추진 증권사에 대하여 사모펀드 운용업과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 영위를 허용('13.12월, 「증권회사 M&A 촉진방안」)
  - \* 개인연금신탁 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&A에 한해 한시 허용

### 집합투자업

-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 마련 및 공표 ([→참고3](#))
  - (현행) 자산운용사 성장 단계별 add-on 인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사업 진출이 제약
  - (개선) 자산운용사 사업 모델을 기준으로 성장 단계별 인가 기준을 마련
    - 증권펀드 운용사 경로, 실물펀드 운용사 경로, 자문·헤지펀드 운용사 경로 등 3가지 경로별 인가 기준 공표
    - 인가 기준은 업력, 수탁고<sup>\*</sup>를 기준으로 하되, 공모펀드 진출시에는 필요시 금감원 검사<sup>\*\*</sup>를 거쳐 내부통제의 적절성을 점검 후 인가
- \* 싱가포르도 자산운용사의 단계별 인가 기준으로 업력, 수탁고, 평판 등을 활용
- \*\* 인가 신청 전 1년내 검사를 받은 경우 추가 검사 필요 없음

## 겸영 금융투자업자

- (보험)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의 금전신탁 겸영 허용

## 선물업자

- 선물사의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
  - (현행) 상품(commodity)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
  - (개선) 상품 뿐만 아니라, 통화·이자율·신용 기초 장외 파생거래 중개도 허용

◇ 아울러, 금융투자업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 제공

① 인가 신청시 '신규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\*'을 필수 제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인가후 6개월내 보고토록 의무화

\* 인력확보, 사업계획상 인력 양성계획 등 심사과정에서 검토

②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평가되는 신청건은 우선적으로 심사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추진과제	필요조치	추진일정	소관
<b>[1] 인가제도 개선</b>			
· 인가·등록 업무단위 개편	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	'14.하반기	금융위
·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'14.하반기	금융위
·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	금융투자업규정 개정	'14.하반기	금융위
· 숙려기간 폐지	행정조치	'14.9월	금감원
· 자진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	금융투자업규정 개정	'14.하반기	금융위
· 인가·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'14.하반기	금융위
<b>[2] 인가절차 정비</b>			
· Fast-track 인가 시행	행정조치	'14.9월	금융위·금감원
· 인가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 공표	가이드라인 공표	'14.9월	금감원
· 인가시 제출 서류 간소화	행정조치	'14.9월	금감원
<b>[3] 인가정책 보완</b>			
· 투자매매·중개업 '일괄인가제' 시행	인가정책 조정	'14.9월	금융위·금감원
· 경영금융투자업자 인가범위 확대	인가정책 조정	'14.하반기	금융위·금감원
· 선물사 투자중개업 업무범위 확대	인가정책 조정	'14.9월	금융위·금감원
· 일자리 창출 관련 인센티브 제공	인가정책 조정	'14.9월	금융위·금감원

## 참고1

## 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 업무단위

연번	금융투자업 종류	금융투자상품 범위		투자자	자기 자본	체계개편후 인가필요단위
1	투자매매업	증권	채무증권	일반+전문	500	①
2			국공채	일반+전문	200	
3			지분(집합제외)	일반+전문	75	
4			집합투자증권	일반+전문	250	
5				일반+전문	50	
6		증권(인수제외)	채무증권	일반+전문	200	②
7			국공채	일반+전문	80	
8			사채	일반+전문	30	
9			지분(집합제외)	일반+전문	40	
10			집합투자증권	일반+전문	100	
11			RP대상증권	일반+전문	20	③
12				일반+전문	60	
13		증권(인수만)	채무증권 사채	일반+전문	60	폐지
14		장내파생	주권기초	일반+전문	100	
15				일반+전문	50	
16		장외파생	주권기초	일반+전문	900	④
17			주권외기초	일반+전문	450	
18				일반+전문	450	
19			통화·이자율기초	일반+전문	180	
20	투자매매업 (ATS)			전문	300	⑤
21	투자중개업 (RP중개)	증권 (증권)	채무증권	일반+전문	30	⑥
22			지분(집합제외)	전문	5	
23			집합투자증권	일반+전문	10	
24				일반+전문	10	
25				일반+전문	10	
26		장내파생	주권기초	일반+전문	20	
27				일반+전문	10	
28		장외파생	주권기초	일반+전문	100	
29			주권외기초	일반+전문	50	
30				일반+전문	50	
31			통화·이자율기초	일반+전문	20	
32	투자중개업 (ATS)			전문	200	⑦
33	투자중개업 (장외채권증개)	증권	채무증권	전문	30	⑧
34	집합투자업	모든 펀드	증권펀드(MMF포함)	일반+전문	80	⑨
35			부동산펀드	일반+전문	40	
36			특별자산펀드	일반+전문	20	
37			혼합자산펀드	일반+전문	20	
38				일반+전문	60	
39	신탁업	모든 신탁재산	금전만신탁	일반+전문	250	⑩
40			금전제외신탁	일반+전문	130	⑪
41				일반+전문	120	⑫
42			부동산신탁	일반+전문	100	⑬
43						
44	투자자문업	증권, 파생상품, 부동산, 예치금	증권, 파생상품, 예치금	일반+전문	8	
45			부동산, 예치금	일반+전문	5	
46				일반+전문	3	
47	투자일임업	증권, 파생상품, 부동산, 예치금	증권, 파생상품, 예치금	일반+전문	27	
48			부동산, 예치금	일반+전문	15	
				일반+전문	12	

\* 현재 1~42번 단위는 '인가제', 43~48번 단위는 "등록제"로 운영 중

\* 체계 개편후 :   인가필요 업무단위  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 전환

## 참고2

## 업무단위 조합 '일괄 인가제'(모듈형 인가제) 개요

### ① 업무단위 조합(모듈, Module)의 개념

- 상호 연관성이 높아 함께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가·등록 업무 단위의 조합

### ② 업무단위 조합 일괄인가제

-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하여 신규 인가시, 상호 연관된 업무단위 조합을 일괄적으로 인가

### ③ 업무단위 조합 (예시)

- 사업 전문화·특화

업무 성격	인가·등록 업무단위		최소 필요자본
	필수	선택가능	
①증개업(Brokerage)	· 투자증개(증권) · 투자증개(장내파생)	· 투자자문 · 투자일임	50억 원
②소형 자산관리업	· ①의 업무단위 · 투자매매 (증권, 인수제외) · 투자매매(장내파생)	-	350억 원
③전통적 IB	· ①, ②의 업무단위 · 투자매매 (증권, 인수포함) · 장외파생 매매·증개	· 집합투자업(사모)	1,650억 원

- 상품별 전문화·특화

업무 성격	인가·등록 업무단위		최소 필요자본
	필수	선택가능	
①주식 매매·증개	· 투자증개(주식) · 투자매매(주식)	· 투자자문(주식) · 투자일임(주식)	110억 원
②장내파생 매매·증개	· 투자증개(장내파생) · 투자매매(장내파생)	· 투자자문(파생) · 투자일임(파생)	120억 원

### 참고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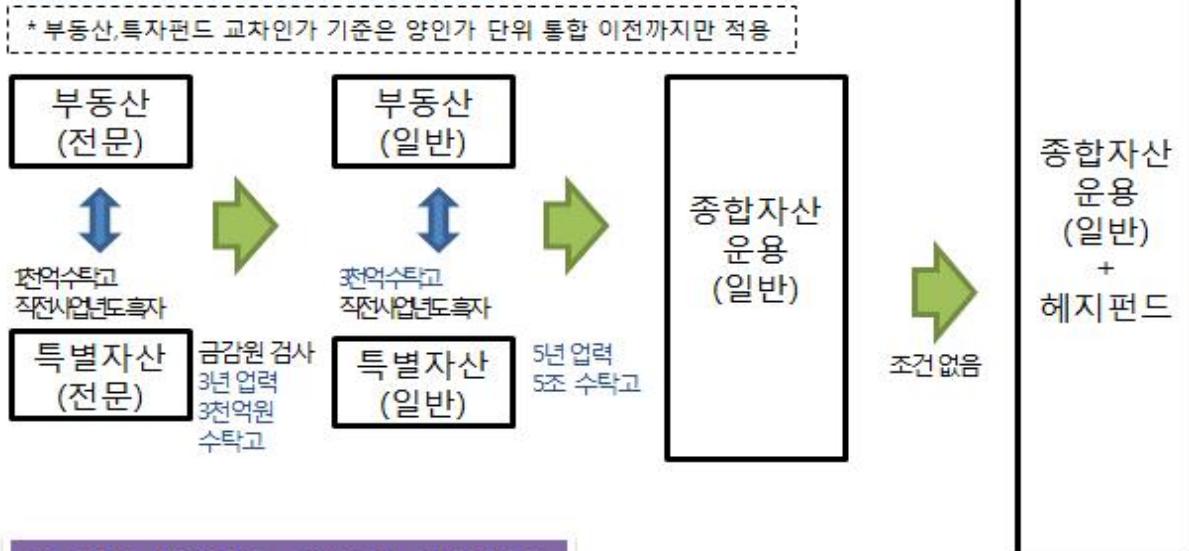
### 자산운용사 성장경로(안)

- ◇ 사업 초기 기관투자자의 수탁금 없이 자생하기 어려운 영업 모델 감안시, 원스톱(One-stop)인가 보다는 특정 분야에서의 운용 평판을 쌓은 후 단계적으로 인가를 확대하는 성장형 인가 모델이 바람직

#### 1. 증권펀드 운용사 성장경로



#### 2. 실물펀드 운용사 성장경로



#### 3. 자문.헤지펀드 운용사 성장경로



\* 기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운용업 등록 단위 신설시 새로운 단계별 성장경로 마련